

## 제2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 목 차

- 제2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의안 검토보고서..... 2면
- 제2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발의 의안..... 13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3. 9. 4.(월) 10:3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 제2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도희재의원외6인】
○ 성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김종식의원외6인】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 성 주 군 의 회

#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1. 제 안 자 : 도희재 의원 외 6인

## 2. 제정이유

- 성인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에 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안 제6조)
- 사업의 시행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8조)

## 4. 참고사항

- 조례안예고 : 의견없음(2023. 8. 18. ~ 8. 24.)
- 관 계 법 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것입니다.
- 최근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특히 마약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의존성, 내성, 금단현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며 한번 투약을 시작하면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자의로 끊기가 상당히 어려우므로 조례안 제정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여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해 군민들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1. 제 안 자 : 구교강 의원 외 6인

## 2. 제정이유

- 심각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군수 및 사업자와 군민의 책무 사항(안 제2조~제3조)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체계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4. 참고사항

- 조례안예고 : 의견없음(2023. 8. 18. ~ 8. 24.)
- 관계 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인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강화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녹색성장 추진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성주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 1. 제 안 자 : 김종식 의원 외 6인

##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성주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4. 참고사항

- 조례안예고 : 의견없음(2023. 8. 18. ~ 8. 24.)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를 근거로 하여 성주군민의 대의기관인 성주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군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민의 다양하며 창의적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여 성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 제 안 자 : 성주군수

## 2. 제안이유

- 성주읍 금산리 724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이었던 「교육·연수 청소년 힐링공간 조성사업」 및 「꿈별터 문화센터 건립사업」 이 취소되어 해당 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포함하고자 함.

## 3.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4. 주요변경 내용

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				비고
	소재지	부지(건물)면적(m <sup>2</sup> )	용도	부서	
2021년 정기분	성주읍 금산리 724, 724-1, 724-2, 724-3	36,912 (1,871)	교육 연수 및 청소년 힐링공간 설치	총무과	당초
2023년 정기분	성주읍 금산리 724, 성주읍 금산리 724-2, 성주읍 금산리 724-3	23,248 (4,075)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농정과	변경
	성주읍 금산리 724-2	1,321 (1,225)	꿈별터 문화센터 건립사업	도시계획과	변경
2023년 2차 수시분	성주읍 금산리 724, 724-1, 724-2, 724-3	36,912 (2,903)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농정과	변경

## 5.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3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182억원
    - 2022년 : 12억(기본 및 실시설계비, 프로그램개발비)
    - 2023년 : 85억(건축 및 시설공사)
    - 2024년 : 85억(건축 및 시설공사)
  - 재원조달
    - 국비 91억 도비 27.3억 군비 63.7억
  - 재원별 사업비
    - 기본 및 실시 설계비, 프로그램개발비 : 12억
    - 건축공사(토목, 전기 등 포함) : 170억
- 사업규모
  - 위치 :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 724 외 3필지(구.삼동연수원)
  - 부지면적 : 당초 23,248㎡ ⇨ 변경 36,912㎡
  - 건물 : 2,903㎡(성주읍 금산리 724, 724-1 일원)
    - 케어팜 복합센터(2,132㎡, 112억)
      - 케어센터 : 건강지원실, 프로그램실, 생활실, 사무실, 상담실 등
      - 팜 센터 : 로컬푸드 체험·판매시설, 교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
    - 임시거주시설(93㎡, 4억)
    - 한옥카페(178.2㎡, 12억, 리모델링)
    - 스마트가든(유리온실) : 1동, 500㎡, 3억
  - 야외시설물 1식, 13억(성주읍 금산리 724-2 일원)
  - 활동텃밭, 원예정원 : 11,000㎡ 정도 (성주읍 금산리 724-2, 724-3 일원)
  - 숲속치유실 : 성주읍 금산리 724-2 일원

○ 세부계획

소재지	부지현황			건축현황 및 계획			이용계획
	지목	용도지역	면적(㎡)	용도	면적(㎡)	계획	
계			36,912		1,871		
금산리 724	종교용지	계획관리	985	유치원(2층)	486.64	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어팜복합센터(2,132㎡)</li> <li>○ 임시거주시설(93㎡)</li> <li>○ 한옥카페(178㎡)</li> <li>○ 유리온실(500㎡)</li> </ul>
금산리 724-1	종교용지	"	9,963	연수원(2층)	983.33		
금산리 724-2	전	"	22,896	식당	222.42		
금산리 724-3	전	"	3,068	교육·숙소	178.2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텃밭, 원예정원</li> <li>○ 숲속치유실</li> <li>○ 야외시설물</li> </ul>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당초 성주읍 금산리 724번지 일원에 예정이었던 ‘교육·연수 청소년 힐링공간 조성사업’ 및 ‘꿈별터 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취소되어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부지면적 23,248㎡와 취소된 사업 부지면적 13,664㎡에 임시거주시설 및 야외시설물 1식을 증축하고, 기존 교육 및 숙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농장, 교육센터,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통해 지역 주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함께 일상생활을 하며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당 부지에 사업이 몇 차례 변경된 만큼 사업추진 시 세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3. 9. 4.(월) 10:30  
성주군의회의 본회의장

# 제275회 성주군의회의(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발의 및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 발의 및 제출자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성 주 군 수】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성 주 군 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화숙의원외6인】
4.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도희재의원외6인】
5. 성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구교강의원외6인】
6. 성주군의회의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김종식의의원외6인】
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 주 군 수】



## 성 주 군 의 회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8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

## 2) 주요내용

- 예산규모 : 18,820백만원
  - 일반회계 : 18,500백만원
  - 특별회계 : 320백만원

※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 별첨

## 3) 첨부서류

- 2023년도 예산편성기준(기 제출)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참고자료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8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 2) 주요내용

- 기금예산규모 : 180백만원
  - 성주군재난관리기금 : 176백만원
  - 성주군노인복지기금 : 4백만원
- ※ 기금별 세입세출 내역 별첨

## 3) 첨부서류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화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3. 8. .
발 의 자 : 이화숙 · 도희재 · 구교강 김경호 · 김종식 · 여노연 장익봉 의원(7인)

## 1. 주 문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본 의회 의원 중 7명 이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 9. 4. ~ 9. 11.까지 활동할 것을 제안함.

## 2. 제안이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도회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3. 8. .
발 의 자 : 도회재 · 구교강 · 김경호 김종식 · 여노연 · 장익봉 이화숙 의원

## 1. 제정이유

성인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다.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사업의 시행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3. 조 례 안 : 불 임

## 4. 참고사항

- 가. 예고기간 : 2023. 8. 18. ~ 8. 24.
- 나.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용 및 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성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시행)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군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성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구교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3. 8. .
발 의 자 : 구교강 · 도희재 · 김경호 김종식 · 여노연 · 장익봉 이화숙 의원

## 1. 제정이유

심각한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군수와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체계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바.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3. 조 례 안 : 불 임

## 4. 참고사항

- 가. 예고기간 : 2023. 8. 18. ~ 8. 24.
- 나.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주군(이하 “군”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 사업자 및 성주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성주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 관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② 군은 성주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성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성주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사항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체계 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성주군 환경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른 성주군 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주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성주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 포함된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기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기후위기 대응사업) 군수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기후변화 또는 탄소중립 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단체를 말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

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성주군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주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성주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군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 및 국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 교류 등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사업과 교육·홍보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해 군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추진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참 고****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8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김종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23. 8. .
발의자 : 김종식 · 도희재 · 구교강 김경호 · 여노연 · 장익봉 이화숙 의원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성주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 중요사항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투명한 군정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조 례 안 : 불 임

## 4. 참고사항

- 가. 예고기간 : 2023. 8. 18. ~ 8. 24.
-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성주군 조례 제 호

## 성주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성주군의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성주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외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MOU), 양해각서(MOA)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 규정을 두거나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교류 협력 사업의 경우로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백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재산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또는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결을 받을 수 있다.

제3조(보고사항)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며, 서면 또는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실적,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
2. 제2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군수가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경우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성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8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 1. 제안이유

성주읍 금산리 724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이었던 「교육·연수 청소년 힐링공간 조성사업」 및 「꿈별터 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취소되어 해당 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포함하고자 함.

## 2. 제안근거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 나.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 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3. 주요변경 내용

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				비고
	소재지	부지(건물) 면적(m <sup>2</sup> )	용도	부서	
2021년 정기분	성주읍 금산리 724, 724-1, 724-2, 724-3	36,912 (1,871)	교육·연수 및 청소년 힐링공간 설치	총무과	당초
2023년 정기분	성주읍 금산리 724, 성주읍 금산리 724-2 성주읍 금산리 724-3	23,248 (4,075)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농정과	변경
	성주읍 금산리 724-2	1,321 (1,225)	꿈별터 문화센터 건립사업	도시계획 과	변경
2023년 2차 수시분	성주읍 금산리 724, 724-1, 724-2, 724-3	36,912 (2,903)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농정과	변경

## 4. 사업내용

### 가.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3년)

### 나. 소요예산

- 총사업비 : 182억원
  - 2022년 : 12억(기본 및 실시설계비, 프로그램개발비)
  - 2023년 : 85억(건축 및 시설공사)
  - 2024년 : 85억(건축 및 시설공사)
- 재원조달
  - 국비 91억 도비 27.3억 군비 63.7억
- 재원별 사업비
  - 기본 및 실시 설계비, 프로그램개발비 : 12억
  - 건축공사(토목, 전기 등 포함) : 170억

### 다. 사업규모

- 위 치 :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 724 외 3필지(구.삼동연수원)
- 부지면적 : 당초 23,248㎡ ⇨ 변경 36,912 ㎡
- 건 물 : 2,903㎡(성주읍 금산리 724, 724-1 일원)
  - 케어팜 복합센터(2,132㎡, 112억)
    - 케어센터 : 건강지원실, 프로그램실, 생활실, 사무실, 상담실 등
    - 팜 센터 : 로컬푸드 체험·판매시설, 교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
  - 임시거주시설(93㎡, 4억)
  - 한옥카페(178.2㎡, 12억, 리모델링)
  - 스마트가든(유리온실) : 1동, 500㎡, 3억
- 야외시설물 1식, 13억(성주읍 금산리 724-2 일원)
- 활동텃밭, 원예정원 : 11,000㎡ 정도 (성주읍 금산리 724-2, 724-3 일원)
- 숲속치유실 : 성주읍 금산리 724-2 일원

## 라. 세부계획

소재지	부지현황			건축현황 및 계획			이용계획
	지목	용도 지역	면적 (m <sup>2</sup> )	용도	면적 (m <sup>2</sup> )	계획	
계			36,912		1,871		
금산리 724	종교 용지	계획 관리	985	유치원 (2층)	486.64	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케어팜복합센터 (2,132m<sup>2</sup>)</li> <li>○ 임시거주시설(93m<sup>2</sup>)</li> <li>○ 한옥카페(178m<sup>2</sup>)</li> <li>○ 유리온실(500m<sup>2</sup>)</li> </ul>
금산리 724-1	종교 용지	"	9,963	연수원 (2층)	983.33		
금산리 724-2	전	"	22,896	식당	222.42		
금산리 724-3	전	"	3,068	교육·숙소	178.2	리모 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텃밭, 원예정원</li> <li>○ 숲속치유실</li> <li>○ 야외시설물</li> </ul>



## 202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제2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수량				
	해	당		없	음	

-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 2023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제2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 상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 수 희망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해		당		없		음		

-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부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2023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제2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교환대상 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건	처 분 취 득	해		당		없		음		
계	부지 처분 취득									
	건물 처분 취득									
	기타 처분 취득									

-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부지가 5,000m<sup>2</sup>이고, 교환대상 부지가 2,000m<sup>2</sup>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 가액이 된다.

## 2023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제2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양여 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 사유 및 근거 법령	양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 량						
	해		당		없		음		
계	부지 건물 기타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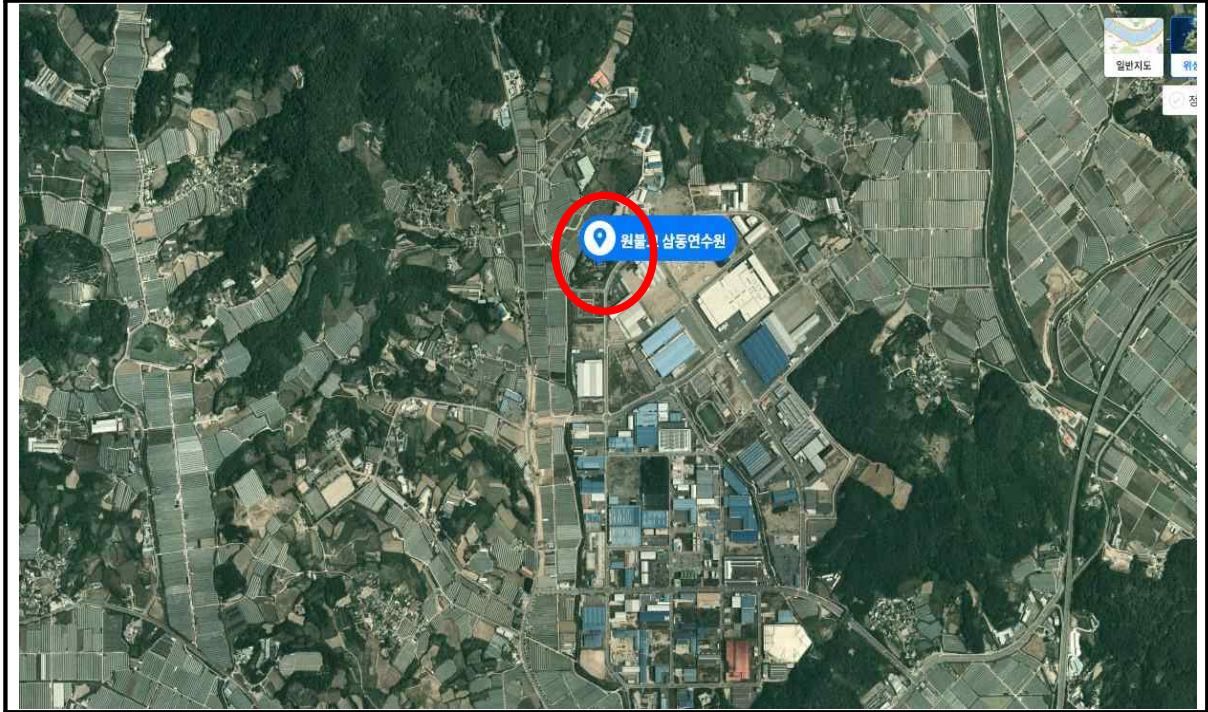
## 2023년도 기타처분 대상재산목록(제2차 수시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해		당		없		음

#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사업



〈사업장 위치도〉



〈사업장 배치도〉